산학협력위원회규정 3-1-6

규정번호 3-1-6
제정일자 2009.9.14
최근개정 2025.3.31
개정차수 10차 개정
관리부서 산학협력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산학협력활동 및 산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기획실장·교무처장·학생지원처장·산학협력처장·사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학부의 학부장과 관련 산업계 인사를 위촉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04.26., 2018.08.27., 2018.12.10.,2024.7.24)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약간 명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12.10.,2024.7.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7.24.)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위원정수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정책 방안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체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따른 인력양성 추진에 관한 사항
3. 산학연계 교육 및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산업체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 협약체결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사업의 신청 및 결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 촉진 및 사업관련 운영규정 자문에 관한 사항
8. 산학협력협의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9.06.17.,2024.7.24)
9.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4.7.24.)
10. 학교기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4.7.24.)
11. 지산학연 협력 공유·협업을 통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동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3.31.)
12.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개정 2024.7.24.)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다.

제8조(업무관리 및 간사) 위원회의 업무는 산학협력처에서 관장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업무부서 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2018.12.10)

제9조(예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산학협동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4> <생략>

<5> 산학협력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산학협력과”를 각각 “산학협력팀”으로 하고, “산학협력과장”을 각각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6> - <49>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 <11> <생략>

<11> 산학협력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 3조 ①항의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을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으로 한다.

<12> - <30>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8호~제11호)